

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·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

2026. 10.

공정거래위원회
기업집단관리과

I 제도 개요

- 금융·보험사가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·강화를 위해 고객 예탁자금을 활용하지 않도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이하 '상출집단') 소속 금융·보험사의 국내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(공정거래법 제25조 제1항)
 - 단, 다음의 경우 의결권 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
 - (단서 1호) 금융·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·소유하는 경우
 - (단서 2호) 「보험업법」 등에 의한 승인 등을 받은 경우
 - (단서 3호)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임원선임·해임, 정관변경, 비계열사로의 합병·영업양도에 대한 의결권 행사인 경우(특수관계인 합산 15% 내)
 - 또한, 타법 특례에 따라 ①금융주력집단* 소속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·투자목적회사·투자대상기업, ②농협금융지주회사·자회사는 미적용
- ※ ①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 제3항에 따라 금융주력집단 소속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(PEF)·투자목적회사(SPC) 및 투자대상기업, ②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5조 적용예외
- * 상출집단의 자산총액(공정자산) 중 PEF 및 SPC를 제외한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액(공정자산)을 기준으로 금융·보험사의 자본총액(또는 자본금)의 비중이 75% 이상인 집단(자본시장법 제249조의18)

II 금융·보험사 일반현황 및 출자 현황

- (일반현황) '26.5월 기준 47개 상출집단 중 금융·보험사를 보유한 집단(이하 '금산복합집단')은 33개로 총 205개의 금융·보험사를 보유
 - (총수유무) 금산복합집단 중 28개 집단이 총수 있는 집단이며, 총 164개의 금융·보험사를 보유
 - 총수 있는 집단 중 금융·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「다우키움」(26개), 「미래에셋」(20개), 「삼성」(16개) 순

【 상출집단의 금융·보험사 보유 현황 】

(기준: 매년 지정일, 단위: 개)

연도	금산복합집단				금융·보험사가 없는 집단	계
	총수 있는 집단	금융·보험사 수	총수 없는 집단	금융·보험사 수		
25년	32	26	6	41	14	46
26년	33	28	5	41	14	47

- (금융주력여부) 금산복합집단 중 금융주력집단은 「농협」(28개), 「미래에셋」(20개), 「교보생명보험」(10개)

※ '25.5.1.기준 금융주력집단(금융·보험사): 「농협」(27개), 「미래에셋」(24개), 「DB」(13개)

- (출자현황) '26.5월 기준 금산복합집단 중 20개 상출집단 소속 68개 금융·보험사가 181개 계열사(금융 126개, 비금융 55개)에 총 17.4조 원을 출자

【 상출집단 소속 금융·보험사의 계열사 출자 현황 】

('26.5.1. 기준, 단위: 개, 조 원)

구분	금산복합집단 수	계열사에 출자한 금융·보험사 보유 집단 수	계열사에 출자한 금융·보험사 수	피출자 회사 수	비금융·보험사 수	출자금
금융주력집단	3개	3개	21	64	12	10.6
비금융주력집단	30개	17개	47	117	43	6.9
계	33개	20개	68	181	55	17.4

- 상출집단 소속 금융·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55개이며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0.83조원임

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·보험사의 계열사 출자 추이 】

(매년 지정일 기준)

구분	금산복합집단 수	출자 금융사 수	피출자 계열사 수(개)			금융·보험사 출자금(조원)			평균 지분율* (비금융) (%)
			소계	비금융	금융	총액	비금융	금융	
'25년	32	57	140	43	97	14.05	0.31	13.74	3.95
'26년	33	68	181	55	126	17.44	0.83	16.61	9.33

* 평균지분율(비금융) = $\frac{\text{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전체 출자 금액}}{\text{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회사의 전체 자본금}}$

Ⅲ 금융·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

- (의결권 행사) 6개 상출집단 소속 14개 금융·보험사가 20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399회 의결권을 행사*

* 실태조사 대상 기간: '24.5.14.(24년 지정일) ~ '26.4.30.(26년 지정일 직전)

- ① (예외적 행사) 3개 집단 소속 8개 금융·보험사가 13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단서2호 및 단서3호에 따라 총 312회 의결권 행사

* 금융·보험사가 단서 제1호(금융·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·소유한 경우)에 따라 금융·보험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

【 공정거래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권 행사 수 】

(단위: 회)

조사연도	2021	2022
적법한 의결권행사 횟수	37	41

※ '22년 이후부터는 금융·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함
'24년 의결권 행사 수가 증가한 이유는 '22년 이후 설립된 리츠회사가 실태조사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(84건)

- 금년 실태조사부터는, 기업들이 상법 개정* 등에 발맞춰 안건을 세부적으로 분류·상정하는 추세이며 실제로 안전별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비율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세부안건을 별도 집계**

*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선출 시 특수관계인 합산 3% 이내 행사,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

** (예) 정관변경(1-1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, 1-2호 이사의 임기 조문 정비) 안건이 상정된 경우, 종전에는 1건(대분류)으로 집계하였으나 금년에는 2건(세부분류)으로 집계

- 또한, 직전 조사에서는 일부 금융·보험사의 리츠회사* 취득·소유 승인 시점('23년 이후) 이후 일부 기간만 포함된 반면, 금년 조사에서는 전체 기간이 포함되면서 주주총회 횟수 및 의결권 행사 횟수 증가

* 보험업법 승인에 따라 소유한 리츠회사를 말하며(단서 2호), 리츠회사는 통상 사업 연도가 1년 미만으로 2회 이상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

- ② (타법 특례) 자본시장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 제25조 제1항의 의결권 제한 제도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는 총 31회

- ③ (기타) 그 외 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위반혐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검토 진행 중

□ (행사유형) 3개 상출집단 소속 8개 금융·보험사가 13개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권 행사

① (단서2호) 3개 집단 소속 6개 금융·보험사가 10개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 총 221회 의결권 행사

- '24년 실태조사 결과 대비 리츠회사 대상 의결권 행사 횟수 증가

【 단서 2호 관련 의결권 행사 현황 】

기업집단	금융·보험사	피출자회사	의결권 행사
삼성	삼성생명보험(주)	(주)호텔신라	4
		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주)	62
	삼성화재해상보험(주)	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주)	62
한화	한화생명보험(주)	(주)한화육삼시티	11
		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주)	36
	한화손해보험(주)	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주)	20
교보생명 보험	교보생명보험(주)	(주)교보문고	5
		교보리얼코(주)	3
		교보디티에스(주)(舊 교보정보통신(주))	2
		케이씨에이서비스(주)	6
		교보다솜케어(주)	4
	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(주)	포트리스이노베이션(주)	6
합계			221

② (단서3호) 「삼성」 소속 4개 금융·보험사가 4개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 총 91회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합산 15% 이내에서 행사

- '24년 실태조사 결과 대비 행사 유형 등은 유사한 수준이며*, 금년부터 세부안건을 별도 집계함에 따라 의결권 행사 횟수 증가

* '24년 방식으로 집계 시 행사 횟수는 46회로 '24년(44회)과 유사한 수준

【 단서 3호 관련 의결권 행사 현황 】

기업집단	금융·보험사	피출자회사	의결권 행사	안건내용
삼성	삼성생명보험(주)	삼성전자(주)	15	이사·감사 선임, 정관변경
		(주)호텔신라	9	
		(주)에스원	10	
	삼성증권(주)	(주)호텔신라	9	
		(주)에스원	10	
	삼성카드(주)	(주)호텔신라	9	
		(주)에스원	10	
	삼성화재해상보험(주)	삼성전자(주)	15	
		삼성이앤에이(주)	4	
합계			91	

IV 평가 및 향후계획

□ 상출집단 소속 금융·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*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

* 15개 집단 소속 27개 금융·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

□ 다만, 상출집단 소속 금융·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건 중 공정거래법 단서 2호 및 3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횟수 증가*

* 의결권 행사 건수: ('21~'22년) 78회 → ('24년) 161회 → ('26년) 312회

○ 금년 실태조사부터는, 기업들이 상법 개정* 등에 발맞춰 안전을 세부적으로 분류·상정하는 추세이며 실제로 안전별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비율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세부안건을 별도 집계**

*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선출 시 특수관계인 합산 3% 이내 행사,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

** (예) 정관변경(1-1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, 1-2호 이사의 임기 조문 정비) 안건이 상정된 경우, 종전에는 1건(대분류)으로 집계하였으나 금년에는 2건(세부분류)으로 집계

- 종전 집계 방식(대분류)에서는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,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세부안전별 집계 방식으로 변경한 것임

- 또한, 직전 조사에서는 일부 금융·보험사의 리츠회사* 취득·소유 승인 시점('23년 이후) 이후 일부 기간만 포함된 반면, 금년 조사에서는 전체 기간이 포함되면서 주주총회 횟수 및 의결권 행사 횟수 증가

* 보험업법 승인에 따라 소유한 리츠회사를 말하며(단서 2호), 리츠회사는 통상 사업 연도가 1년 미만으로 2회 이상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

□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융·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금융·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하게 지배력 유지·강화에 남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